

대한민국 특허청(KR)

Int. Cl.
G 11 B 23/03.

실용신안공보(Y₁)

제 915 호

출고일자 서기 1988. 3. 15

공고번호 88-807

출원일자 서기 1981. 10. 10

출원번호 81-6872

우선권주장 1980. 10. 9 일본(JP)
55-144616

심사관 박승남

고안사 이나바 스에이

일본국 가나가와정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모리야초 3 조 메 12만지

출원인 니뽄 키타 카부시게 가이사 대표자: 신지 아케토

일본국 가나가와정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모리야초 3 조 메 12만지

출제리인 변리사 이병호

(전 3면)

원반형 기록매체 수납용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실시예의 정면도.

제2도 내지 제4도는 제1도의 실시예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제5도 및 제6도는 제각기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1: 수납용기몸체 2: 뒷덮개 3: 앞덮개 8: 돌기부 12: 홈기부 13: 오목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원반형 기록매체의 수납용기에 관한 것이며, 특히 원반형기록매체를 저장장치에 장착할 때, 수납용기에 수납된 상태로 저장장치에 삽입되며, 저장장치에 기록매체를 남기고 수납용기만을 추출하는 형식의 원반형기록매체 저장장치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당한 수납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수납용기에서는, 저장장치의 상면 및 하면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이것을 결합시켜서 관성시키는 것이 기술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면 및 하면을 따로따로 설명하여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수납용기에 수용된 원반형 기록매체는 직경이 25cm 내지 30cm 정도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을 수용하는 용기는 당연히 이 것보다 큰 크기의 것으로, 대개의 감성이 깊어져서 되고 또한 삽입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져서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좋지 않게 된다.

본 고안은 이러한 크기의 원통형의 몸체와, 이러한 몸체의 후단부에 삽입된 직경으로 구성되어져서, 제일 큰 부분을 감추는 부재를 감출수행가능하며, 비교적 소형의 몸체로서 삽입이 가능하며, 안정된 가격으로 생산성이 양호한 감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실시예를 설명하겠다.

제1도는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의 정면도이며 제2도는 제1도 실시예의 일부 확대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수납용기몸체 1은 원통형으로 형성되어진 것으로서 이것의 후단에는 뒷덮개 3이 삽입되어져 있고 이것의 선단에는 앞덮개 2가 삽입되어져서 구성부가 설치되어 있다. 수납용기몸체 1은 7호의 부 4 및 돌기부 5를 갖는 원통형대로 형성되어져서 상하면부 4의 측면부 5의 근처에 두꺼운 부분 6이 설치되